



제 438회 국회 (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임종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9996호)

2026. 8.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문위원 이 현 중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1. 산촌혁신특구 지정 근거 신설	2
2. 산촌혁신특구 소재 기업에 대한 조세 감면 근거 신설	5
3. 산촌혁신특구 내 보전산지 행위제한 완화 특례 신설	11
4. 산촌창업지원센터의 설치	13
5. 산촌혁신특구 이전기업에 대한 지원	15

I. 제안경위

가. 제 안 자 : 임종득의원 등 12인

나. 제 안 일 : 2026. 7. 16.

다. 회 부 일 : 2026. 7. 20.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산촌은 급격한 인구 감소와 초고령화로 인하여 지방소멸 위험이 심각한 지역으로 꼽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산촌지역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기업 유치 및 지역 활성화 제도가 부족하고, 각종 규제로 인하여 새로운 산업으로의 진입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

이에 산촌혁신특구를 지정하여 세금 감면, 규제특례, 기업 이전 지원 및 산촌창업지원센터 설치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촌 지역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6까지 신설).

Ⅲ. 검토의견

1. 산촌혁신특구 지정 근거 신설

개정안은 산촌의 인구 감소 대응 및 지역 활성화를 위하여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산촌혁신특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정 기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신설>	제25조의2(산촌혁신특구의 지정 등) ① 산림청장은 산촌의 인구 감소 대응 및 지역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산촌혁신특구(이하 “혁신특구”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② 혁신특구의 지정 기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행 산촌 관련 지역 지정 제도는 시·도지사가 산촌진흥을 위해 지정하는 산촌진흥지역이 있으며,¹⁾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산촌의 진흥에

1) 「산림기본법」 제28조(산촌진흥지역의 지정) ①시·도지사는 산촌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산촌진흥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산촌진흥지역의 지정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산촌진흥시책의 수립)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촌주민의 소득원 개발·주거환경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고 산촌진흥지역에서 산촌진흥특화사업 추진 시 사업비 보조·융자나 국유림 특례 등을 지원할 수 있으나, 규제 특례, 세제지원 및 기업 유치 지원 등은 뒷받침되지 않고 있음.

산촌²⁾은 급격한 인구 감소와 초고령화로 지방소멸 위험이 높은 지역임에도, 현행법상 산촌 지역의 기업 유치 및 창업 촉진 등 경제적으로 자생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적 수단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농촌특화지구('24년)·기회발전특구('23년)·규제자유특구('19년)·지역특화발전특구('04년) 등 농촌이나 비수도권 등의 지역 개발 및 산업 육성 등을 위한 타 부처 특구 제도가 확대되는 가운데,³⁾ 산촌의 특수성[높은 보전산지 비중(85%), 소규모 취락 구조]을 반영한 별도의 특구 제도 도입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음.⁴⁾

개선 등을 위하여 종합적인 산촌진흥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촌의 진흥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2) “산촌”은 산림면적의 비율이 행정구역면적 대비 70% 이상으로 현저히 높고, 인구밀도와 경지면적 비율이 전국 읍·면의 평균 이하로 낮은 지역을 말함(「산림기본법」 제3조제2호).

3) ①“농촌특화지구”란 농촌공간을 효율적으로 개발·이용·보전하거나 삶터·일터·쉼터로서의 농촌의 기능을 재생·증진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지구(「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②“기회발전특구”란 개인 또는 법인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필요한 곳으로 지정·고시되는 지역(「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 관련 특별법」), ③“규제자유특구(규제프리존)”란 비수도권 시·도 등에서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규제특례 등이 적용되는 구역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고시한 구역(「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④“지역특화발전특구”란 지역의 특화발전을 위하여 설정된 구역으로서 지정·고시된 지역(「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4)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서 피해지역 산림경영 지원을 위해 산림경영특구와 산림투자선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일반 산촌이 아닌 재난지역에 대한 특례 성격임.

이에 개정안은 산촌혁신특구 지정 근거를 신설하여 산촌 여건에 맞는 규제 특례 및 지원 시책을 집중 적용함으로써 기업 유치 및 일자리 창출, 인구 유입 확대를 통해 산촌 지역을 활성화하려는 데에 입법의 의의가 있는 것으로 보임.

산림청은 산촌의 급격한 인구감소 대응 및 지역 활성화를 위한 정책 수단 강화 취지에 공감하며, 개정안의 유사 입법례인 농촌특화지구 제도의 경우 지방정부에서 특화지구를 지정·고시하도록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산촌혁신특구의 지정권자에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⁵⁾

5)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농촌특화지구의 지정 등) ① 시장·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시행계획이 승인되거나 확정되면 농촌특화지구를 지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쾌적한 정주 환경 조성 및 생태 환경 및 농촌다움의 유지·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와 시·군별로 농촌특화지구의 총면적과 총수를 정할 수 있다.
③ 농촌특화지구의 도서(圖書) 등의 작성방법과 지정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산촌혁신특구 소재 기업에 대한 조세 감면 근거 신설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산촌혁신특구에 소재한 기업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조세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소득세·재산세·취득세 등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신설>	제25조의3(조세 감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혁신특구에 소재한 기업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그 밖에 조세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 소득세, 재산세, 취득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조세 관계 법률 외에 개별법에서 조세 감면에 관한 근거를 두고 있는 입법례는 있으며, 해당 내용은 「조세특례제한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는 확인적 규정임.

【 조세 감면 사항을 규정한 입법례 】

법률명	관련 조문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23조(기회발전특구의 지정 및 지원)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회발전특구에 투자하는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조세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또는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제43조(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②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계획에 따라 건축하는 농촌생활서비스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시장·군수 등은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지방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세제 및 자금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평화경제특구에 입주하거나 투자하는 기업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조세특례는 「조세특례제한법」이나 「지방세특례제한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소득세법」·「법인세법」 등 개별 세법에서만 정할 수 있으므로,⁶⁾

6) 「조세특례제한법」 제3조(조세특례의 제한) ①이 법, 「국세기본법」 및 조약과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조세특례를 정할 수 없다.

1. 「소득세법」
2. 「법인세법」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4. 「부가가치세법」
5. 「개별소비세법」
6. 「주세법」
7. 「인지세법」
8. 「증권거래세법」
9. 「국세징수법」
10.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에서 조세 감면 근거를 규정하는 경우에도 실제 세제지원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특례제한법」이나 「소득세법」·「법인세법」 등 조세특례가 가능한 세법의 개정안 발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동 규정과 관련하여 관계 기관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함.

① (산림청) 조세 지출은 「조세특례제한법」 체계에서 일괄 관리되고 있어 감면 대상·기간·한도에 대한 재정당국 협의 없이 개별법에 근거만 두는 경우 실제 지원으로 이어지기 어려움.

다만, 유사입법례를 참고하여 지방세 감면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현행 법 체계상으로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등에 따른 지방정부 조례에 의한 지방세 감면 근거 신설 등을 함께 검토할

-
11. 「관세법」
 12. 「지방세특례제한법」
 13. 「임시수입부가세법」
 14. 삭제 <2001. 12. 29.>
 15.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16.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17. 삭제 <2000. 12. 29.>
 18. 「교육세법」
 19. 「농어촌특별세법」
 20. 삭제 <1999. 5. 24.>
 21.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22. 삭제 <2010. 1. 1.>
 23.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자치도세에 관한 규정만 해당한다)
 25. 「종합부동산세법」

필요가 있음.

② (재정경제부) 세법이 아닌 개별법에 세제 지원 관련 사항을 정하는 것은 「조세특례제한법」과 충돌하는 문제가 있어 삭제 필요함. 개별법에 세제지원 근거를 규정하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에 구체적인 세제지원 규정이 없으면 세제지원이 불가능하므로 규정실익이 없음.

③ (행정안전부) 개정안의 경우 일반 납세자가 다른 법령에 의한 지방세 감면도 가능한 것으로 오해할 여지가 있고, 지방세 특례운영에 혼란을 야기할 소지가 있으므로 삭제가 필요함.

④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조세감면 대상의 범위를 기업뿐만 아니라 개인 사업자와 법인 등까지 확대하여 산촌에서 경영 활동을 영위하는 대상을 포괄적으로 포함할 수 있도록 수정이 필요함.

참고로, 현재 타 부처 소관 특구의 조세 및 지방세 감면 사항은 다음과 같이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특구 관련 조세·지방세 감면 현황 】

<조세특례제한법>

관련 조문	대상 특구	세목	감면 내용	추징
제12조의2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연구개발특구	소득세 법인세	3년 100% + 2년 50% 한도: 투자누계액 50% + 근로자수 × 1,500만원	지정·등록 취소, 폐업·해산, 특구 외 이전 (이자가산)
제99조의4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기회발전특구	양도소득세	특구 소재 주택을 농어촌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판정에서 제외	3년 보유요건 미충족 시 2개월 내 납부
제121조의17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해양박람회특구 평화경제특구	소득세 법인세	창업기업 3년 100% + 2년 50% 개발시행자 3년 50% + 2년 25% 한도: 위와 동일	제121조의19 전담조문 (지정해제·폐업· 투자미이행 등 12개 사유)
제121조의33 (기회발전특구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기회발전특구	소득세 법인세	5년 100% + 2년 50% (현행 특구 감면 최고 수준) 한도: 위와 동일	폐업·해산, 특구 외 이전 (제12조의2⑧ 이자가산 준용)
제121조의34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기회발전특구	법인세 양도소득세	수도권 종전 사업용부동산 양도차익 익금불산입·과세이연	3년 내 사업 폐지·해산, 특구 미이전
제121조의35 (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지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기회발전특구	이자·배당 소득세	9% 분리과세(10년간) 1인 1계좌, 납입한도 3억원	10년 내 해지· 인출

※ 자료 : 산림청

<지방세특례제한법>

1. 제80조의2(기회발전특구로의 이전 등에 대한 감면)

관련 조문	대상	취득세	재산세	조례 추가경감	추징
제80조의2 제1항	특구 내 창업	50% 경감	5년 면제 (수도권은 3년 면제 + 2년 50% 경감)	취득세 50% (수도권 25%) 재산세 50% 이내(감면기간 5년 연장)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내 미사용 또는 타용도 사용, 2년 미만 사용 후 매각·증여 또는 타용도 사용
제80조의2 제2항	수도권 → 수도권 외 특구 이전	50% 경감	5년 면제	취득세·재산세 각 50%	수도권 재설치, 5년 내 폐업,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내 미사용 또는 타용도 사용 등
제80조의2 제3항	특구 내 공장 신설·증설	50% 경감	5년간 75% 경감 (수도권 35%)	취득세 25%	5년 내 폐업,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내 미사용 또는 타용도 사용, 2년 미만 사용 후 매각·증여 또는 타용도 사용

2. 그 밖의 특구 관련 조항

관련 조문	대상 특구	세목	내용	적용기한
제105조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연구개발특구	개인지방소득세	3년 100% + 2년 50%	2018.12.31. 일몰 경과
제156조 (기업도시 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해양박람회특구	개인지방소득세	창업기업 3년 100% + 2년 50% 사후활용 시행자 3년 50% + 2년 25%	2018.12.31. 일몰 경과
제178조 (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전 감면 공통 (일반규정)	취득세	1년 내 미사용, 2년 미만 사용 후 매각 시 추징 + 이자상당액 가산	-

※ 자료 : 산림청

3. 산촌혁신특구 내 보전산지 행위제한 완화 특례 신설

개정안은 산촌혁신특구 내에서 산촌주민 소득 증대 및 지역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산지관리법」 제12조에도 불구하고 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완화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4 신설).

현행	개정안
<신설>	제25조의4(혁신특구 내 규제특례) 혁신특구 내에서 산촌주민의 소득 증대 및 지역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산지 관리법」 제12조에도 불구하고 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을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산지관리법」은 산지를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구분하고, 보전산지에 대해서는 산지의 공익기능 유지 등을 위하여 허용 행위를 열거하여 제한하고 있음.

현행법에도 산촌진흥특화사업 시행지역에 대한 국유림 매각·사용허가 특례가 있으나, 「산지관리법」상 행위제한 자체를 완화하는 특례는 없는

실정임.

그러나 산촌 면적의 상당 부분이 보전산지에 해당함에도 행위제한에 관한 규제 특례가 없어 산촌 내 창업 및 기업 입지 공간 확보는 물론 산촌주민들의 소득 증진 활동에도 애로사항이 있다는 지적임.⁷⁾

따라서 개정안은 산촌혁신특구 내 보전산지 행위제한을 완화하는 특례를 신설하여 투자 유치와 산촌주민의 소득 증대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

다만, 개정안은 혁신특구 내 규제특례가 적용되는 대상 사업과 행위제한의 완화 범위를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으므로, 규제특례의 적용 여부 및 그 범위를 사전에 예측하기 어려울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산림청은 개정 취지에 동의하며, 보전산지 내 행위제한 완화가 입법 취지를 넘어서는 난개발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위법령에서 완화 가능한 사업의 대상과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7) 산촌 지역(439만ha) 전체 산림 면적 355만ha 중 보전산지는 85%(303만ha)에 해당함.

4. 산촌창업지원센터의 설치

개정안은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혁신특구 내에 산촌 특화 직무 교육, 창업·경영컨설팅 지원, 창업공간 제공 등을 위한 산촌창업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5 신설).

현행	개정안
<신설>	<u>제25조의5(산촌창업지원센터의 설치)</u> ① <u>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혁신특구 내에 산촌 특화 직무 교육, 창업 및 경영컨설팅 지원, 창업 공간 제공 등을 위한 산촌창업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u> ② <u>제1항에 따른 산촌창업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현행법은 도시민의 산촌 정착 및 산촌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산림청장이 한국임업진흥원, 산림조합 또는 중앙회 등을 산촌 활성화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⁸⁾

8) 산촌활성화지원센터 : 현재 2개소 지정[임업진흥원('21.3), 충북 산촌활성화지원센터('25.5)]
 - 지정계획 : 총괄(임업진흥원) 1개소, 지역 지원센터는 8개도에 각 1개소씩 지정 추진
 - (운영) 임업인·귀산촌인 상담·교육·홍보 실행 및 프로그램 운영
 * 임업진흥원 : 귀산촌 상담·컨설팅·멘토링(4,472건), 산촌활력특화사업 운영, 이웃산촌여행 실행 등
 * 충북지역센터 : 산주학교, 산촌정원학교, 산촌생활기술학교, 목공교실, 귀산촌 상담 등 150여명

산촌활성화지원센터는 산촌 정착 상담·교육, 산림자원을 활용한 창업 및 기술 지원, 사회적기업 설립 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하며, 국가가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음.

그러나 창업공간 제공 등 물리적 인프라를 갖춘 전담기관이 부재하여 소프트웨어 외에 하드웨어 측면의 산촌 창업 지원에 한계가 있으므로,

개정안은 현행 산촌활성화지원센터와 별개로 혁신특구 내에 별도의 창업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교육·컨설팅·공간 지원을 연계한 원스톱 창업 지원을 통해 산촌 창업을 활성화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다만, 산촌활성화지원센터와 산촌창업지원센터는 교육 및 창업 지원 등에서 역할이 중복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기존 산촌활성화지원센터의 지정 및 사업 범위를 확대하여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산림청은 기존 산촌활성화지원센터와 별개로 특구 내 산촌창업지원센터가 설치·운영될 경우 창업 지원의 새로운 거점으로서 산촌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아 개정안에 동의하는 의견임.

5. 산촌혁신특구 이전기업에 대한 지원

개정안은 국가가 혁신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하여 사무소 신축비 등 이전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6 신설).

현행	개정안
<신설>	제25조의6(이전기업에 대한 지원) 국가는 혁신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하여 사무소 신축비 등 이전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지방 이전 기업에 대한 재정지원은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⁹⁾과 지방투자촉진보조금(산업통상부 소관) 제도 등을 통해 운영되고 있음.

그러나 산촌은 입지 여건상 이전 유인이 다른 지방보다 낮으므로 별도의 이전비용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개정안은 기업의 산촌지역 이전 부담 완화를 통해 투자·고용 유치를 활성화하려는 것으로 긍정적인

9)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24조(기업 및 대학의 지방이전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도권 중 시·군·구별로 인구과밀·산업입지·산업집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있는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의 이전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 행정적·재정적 사항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업이 지방에 사업장을 신설·증설하는 경우 행정적·재정적 사항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측면이 있음.

산림청은 개정 취지에 동의하며, 국가 이외에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산
촌혁신특구에 이전하는 기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수정하여 지원기반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한편, 개정안에 대해서는 「국회법」 제79조의2제1항에 따라 비용추계
요구서가 제출된 상태로, 재정소요와 관련하여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
추계서가 첨부될 예정임.¹⁰⁾

문 의 처
02)6788-5423

10) 국회예산정책처는 의원 또는 위원회가 요구한 비용추계에 대하여, 법안의 내용에 따라 ①비용
추계서, ②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③비용추계 미대상 사유서로 구분하여 작성·회답함. 비
용추계서는 재정이 수반되고 소요 비용의 추계가 가능한 법안, 미첨부 사유서는 재정이 수반되
기는 하지만 기술적으로 비용추계가 어려운 법안, 미대상 사유서는 시행되더라도 재정이 수반
되지 않거나 재정부담에 변화가 없는 법안에 대하여 작성됨(국회예산정책처, 법안비용추계 이
해와 실제, 2024, p. 29).